

■ 업무내용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 · 장비 등으로 수중 ·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준설공사: 하천 ·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등록기준

2025.10.01 개정 기준

1. 자본금

법인	개인
1.5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2. 기술능력

수중공사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준설공사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기술사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화약류관리
기능장	용접, 위험물, 잠수
기사	용접, 토목,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지하수, 항로표지
산업기사	기중기, 준설선, 용접, 위험물, 토목, 콘크리트, 철근, 화약류관리,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시추, 화약취급,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콘크리트, 철근, 시추, 굴착, 잠수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3. 공제조합

2026.07.27 기준

업종	1좌당	자본금	CC등급 이상	C등급
수중 · 준설공사업	958,438원	1.5억원	42좌 (40,254,396원)	53좌 (50,797,214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동일				

4. 시설 · 장비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장비
■ 수중공사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② 공기압축기 ③ 수상·수중통화기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 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 준설공사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다) 앵커바지 : 1척 이상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30~45일 이내 소요